제1849호

2022. 1. 20.(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61

영등포구보

규 칙

· 제81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3

훈 령

· 제1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 폐지훈령 ····· 5

입법예고

· 제2022-10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고 시

· 제2022-15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10

다음 장에 계속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04-2022

공 고

· 제2022-2호 공인 등록 공고 ……12
· 제2022-9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13

규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81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안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 이란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 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공약사항 이행 검증·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기 내 이행 가능성
2. 공약사항 이행의 장애요인 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제5조(이행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행계획안에는 구체적인 공약사업, 공약사업별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조정을 마친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이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전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행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행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 이라 한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을 제출 받은 후,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항의 이행이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평가단의 단원은 사회적·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을 병행하여 선정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평가단 기능 및 회의) ①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
2. 이행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②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 ①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및 건의·자문 사항 등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약사항 이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현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훈령 제1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 폐지훈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0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개정21.1.5./시행21.7.6.) 및 서울시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 신설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기물 관리법 과태료 부과근거 조항 삭제(안 제14조제3항)
-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기준 반영(안 별표1)
-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감면사항 신설(안 제10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전화 02)2670-3437, 팩스 02)2670-3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영등포구청 별관 2층 청소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수수료 감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제14조제3항 중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를 "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2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2.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구 분	품 목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수수료 감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 ---------- ---------- 수 ---------- ---------- ------.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22-15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98 (양평동3가) 외 5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96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11-8 (신길동)	2022-01-20	신규부여	2010-05-27	대방천 명칭 인용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79-8 (문래동3가)	2022-01-20	신규부여	2010-05-27	문래동 동명칭 인용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98 (양평동3가)	2022-01-17	2022-01-20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31-1 (양평동4가)	2022-01-17	2022-01-20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7길 14-13 (당산동3가)	2022-01-17	2022-01-20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6길 15 (당산동4가)	2022-01-17	2022-01-20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2호

공 인 등 록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 공인 등록 내역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등록사유	등록일
직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회인사위원회위원 장인(종)	2.1m * 2.1cm 목각 사각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인사위원회 공인 등록	2022. 1.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회인사위원회위원 장인(횡)	2.1m * 2.1cm 목각 사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9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2. 1.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서울영등포 제6-1-1호 (2022년)	오텍오티스파킹 시스템(유) 강성희	PT1D-76AIK- 오류동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76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2022. 1.12.

○ 문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3905